



#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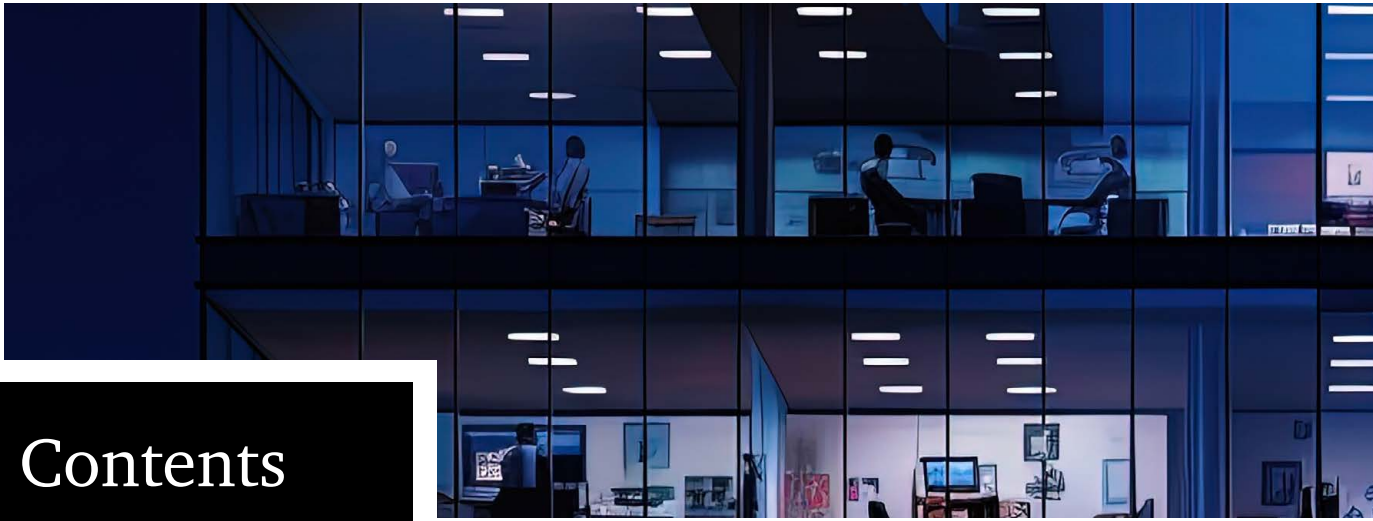
February 2024

## Hot Topic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전략
-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주는 시사점



삼일회계법인



# Contents

## Hot Topic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전략 03
-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주는 시사점 13

## ESG

- ESG 국내외 동향 22

## GAAP

- 2023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한국공인회계사회) 36

## GAAS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40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42
-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44

## Tax

- Tax News 47
- 최신 개정 동향 50
- 최신 예규·판례 51

## Governance

- PwC's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이사회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56



## 삼일PwC 이달의 Contents

**Insights**



### Samil PwC 프리미어 부동산 레터 Vol.5 (February 2024)

2024년 새해 부동산 시장

[보러가기 \(Click\)](#)

**YouTube**



### 전략물자 & 수출통제 (삼일회계법인 김현준 관세사)

포괄적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보러가기 \(Click\)](#)

**Event**



### M&A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세미나

2024년 2월 28일 (수) 오후 3시 · 아모레퍼시픽 2층 아모레홀

2024년 산업별 M&A 트렌드 뿐만 아니라, 기후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안내 보러가기 \(Click\)](#)



# Hot Topic 1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전략

[저자: 최재열 PwC컨설팅 Partner]

코로나-19 시기에는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 기업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긴장 등 새로운 환경과 직면하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성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이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기대가 과거 대비 훨씬 높아졌다. 경영자는 이제 지리, 경제와 분열 문제를 다루는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 이슈로 제때 공급받지 못해 분노한 고객을 진정시키는 위기 관리자, ESG 시각을 통해 의사 결정을 바라보는 책임감 있는 인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할 위험 수용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의 7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소비자 시장 성장률이 20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이러한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 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GDP와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미국이 이 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의 원자재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 태평양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수익성 중심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영자들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4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EO 중 43%가 공급망 혁신에 투자하고 있으며(전 세계 평균 41%),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 Source: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2023

## 공급망 재조정 시의 핵심 고려사항 1: 공급망 경쟁 구도의 이해

많은 기업들이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으로 인한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고자 공급망 재조정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와 같은 좋은 조건의 유치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공급망 형성에서의 협상력은 기업에서 공급업체로, 그리고 현지 관리자와 인력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전되고 있는 등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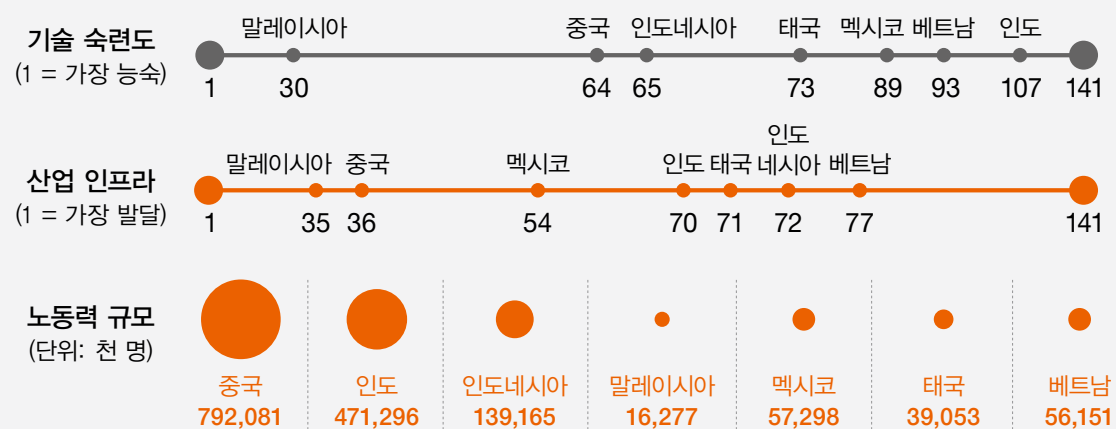
###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나?

기업은 신규 지역을 발굴하고 인력을 유치하며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히 공급업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 신규 지역 진출을 검토

- 신규 지역 진출 시 의료 및 전자 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페낭(Penang),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태국 중부 지방을 고려하는 등 해당 지역의 전체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규 진출 지역에 대한 검토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진출 국가로 자주 언급되는 베트남은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리쇼어링(해외 시설의 국내 복귀)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는 산업용 부동산 붐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반면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해당 지역의 장단점을 따져 보아야 한다. 투자 대상 지역의 노동력 가용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정부 인센티브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Figure: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진출 지역별 검토 항목 비교



※ Source: World Bank Labor stats, Feb 2022; Skills and infrastructure rankings: World Economic Forum 201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41개국 대상 분석)

### ■ 인력 확보 및 유지

- 단순히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인구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경력 개발, 일과 삶의 균형, 문화적 민감성, 기업 이미지, 건강 등 해당 지역의 인력이 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당연한 인력 채용에서 확대하여 인력 생태계 개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교육 기관 및 기술 개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세대별 및 지역별 인력풀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 정부 보조금 외 고려 사항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S, Production-linked Incentive Scheme) 등 정부의 인센티브는 언제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의 가용 인력 풀과 공급업체, 필요로 하는 생태계 존재 여부 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 새로운 공급 협력업체의 확보

- 지역 공급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합작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급 협력업체를 모색할 수 있다. 현지 R&D 투자는 좋은 장기 파트너십을 위한 수단이다. PwC China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계획이며, 제조(29%), 영업과 구매(24%) 및 R&D(9%)에도 투자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 공급망 재조정 시의 핵심 고려사항 2: 차세대 기술의 활용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신속한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투명성을 높여 공급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미래 수요예측을 위해 내부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역 조건, 무역 분쟁의 여지, 기후 리스크, 사이버 전쟁 혹은 스파이의 리스크 등 여러 유형의 리스크 노출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 예로,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대형 소매 체인점에는 대량의 재고가 쌓여 있었고, 팬데믹이 풀려 고객에게 배송했으나 고객 선호가 바뀌었음을 알게 되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다.

### 대량의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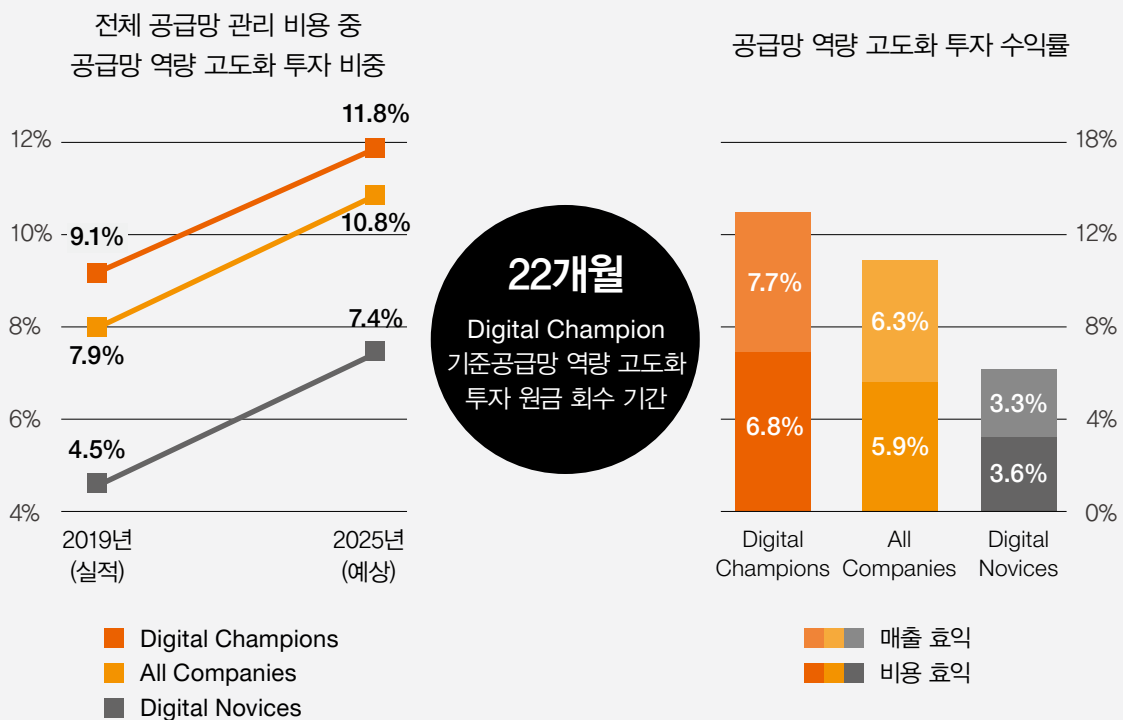
대량의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급망 운영 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해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공급망 내부 상품과 자재의 흐름을 추적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실시간 주문 추적,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송 경로 최적화 및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ESG 준수에도 기여할 수 있다.



### ■ 디지털 공급망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

□ 디지털 공급망 투자는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지속 가능성 개선, 자산 활용 증가, 리스크 관리 개선, 고객에 대한 정시 정품의 납품 비율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디지털 공급망 투자 대상 기술 또한 다양하다. PwC의 2023년 글로벌 리스크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성과가 뛰어난 상위 5%의 '리스크 선구자(Risk Pioneers)'들은 사이버 보안 및 IT(69%), 공급망 및 물류(55%),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데이터(53%)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PwC의 공급망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공급망을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과감히 투자한 디지털 챔피언(Digital Champions)들은 투자 결과 연간 공급망 비용을 6.8% 절감하고 매출을 7.7% 높였으며, 평균 22개월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선도 기업들의 공급망 역량 고도화 투자 강화 및 높은 수익 창출**



※ Source: PwC's Connected and autonomous supply chain ecosystems (1,601개 기업 대상 설문 기반, 2019년 10월~2020년 1월 시행)

## 공급망 재조정 시의 핵심 고려사항 3: 사업 성장 도구로의 ESG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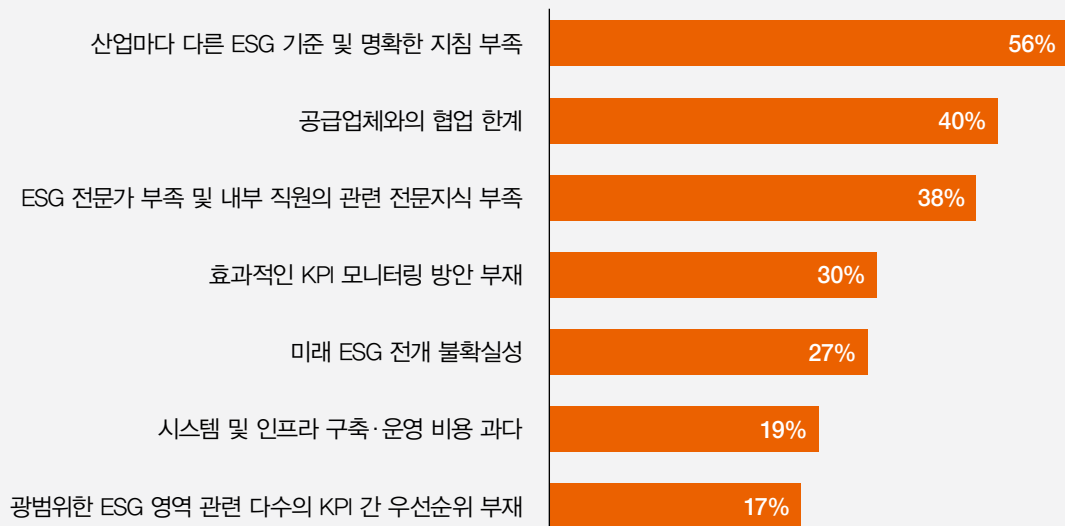
한때 공급망 관리 요소 중 지속 가능성은 단순 지향점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정부 당국과 여러 소비자의 기대 변화로 인해 필수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ESG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기업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WRO(Withhold Release Order)\* 사례와 같이 시장 진입이 거부당할 수 있다. 즉,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될 경우에 미국은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더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미국의 관세청(CBP)이 특정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미국의 노동법, 환경법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 ■ 투자 및 조달 결정에서의 ESG 영향 고려

- 고객,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책 결정자, 세무 당국 등 지속 가능성 고관여자들은 제품 생산 및 배송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므로 복잡한 생태계 내에서 비용 절감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지역 이전 초기에는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며, 공급업체의 노동인력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 운영 방식이 다른 것처럼 지역별 노동력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ure: 공급망 ESG 추진 상의 이슈



※ Source: PwC China Analysis, 2023

### ■ ESG에서 'S(Social)'에 대한 관심 확대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급망은 S 관련 이슈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 글로벌 제조 시장의 43%를 차지할 뿐더러, 고용인의 80%가 저급 또는 중급 기술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 및 저 숙련 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신규 이주 노동자 수는 2021년 220만 명에서 2022년 460만 명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이러한 이주 및 저숙련 노동자는 강제 노동 및 채무 노동 등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국가에서 완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넘어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주요 리스크 요소에 집중해 시스템과 프로세스에서 인적 자원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 비용이 아닌 핵심 가치로서의 지속 가능성

- 지속 가능성은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브랜드 충성도 향상, 투자자 신뢰 증대, 직원 사기 향상, 신규 시장 개척, 신규 고객 유치, 시장 포지셔닝 강화 등 실질적인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SG 투자 성과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ESG 관련 운용 자산(AuM)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6년 현재의 3배인 3.3조 달러로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PwC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60%는 ESG 투자가 비 ESG 투자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답했으며, 투자자의 78%는 ESG 펀드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경영진을 위한 제언

지금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 성장을 위한 공급망 재조정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불안정이 코로나 시기의 공급망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신규 지역, 인력, 공급업체를 찾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전략적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보된 기술과 ESG로 차별화한 기업들은 그에 따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wC는 성장을 위한 공급망 재조정을 위해 경영진들에게 여섯 가지 액션을 제안한다.

### ① 공급망의 중요성 재인지

공급망 관리는 전통적으로 구매 부문에 속해 왔으나 이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공급망 관리는 리스크이자 기회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공급망은 운영 이슈가 아니라 격변하는 시기에 혁신의 열쇠를 쥐는 전략적 자산인 것이다.

### ② 차별화된 가치 제공

잠재적인 새로운 공급업체, 부지, 그리고 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소싱 및 생산을 위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지역, 공급업체와 인력에 대한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여 경쟁사들보다 우월한 협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 ③ 정부 인센티브를 넘어선 기회를 모색하라

정부 보조 혹은 장려금을 넘어서 미래 성장 지역과 공급업체, 인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변에 사용 가능한 인력 풀과 공급업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 상 필요한 생태계가 그곳에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기술 투자

1차원적인 공급망을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장기적 성장과 경쟁 우위를 위해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공급망에 많은 투자를 한 선도 기업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 5 ESG를 가치 창출 동력으로 활용

ESG 원칙을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규정 준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치 창출 동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개척하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는 고객, 투자자, 사업 파트너, 정책 결정자, 세무 당국 및 지속가능성 활동가들이 ESG 문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6 공급업체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공급업체와의 협력은 혁신을 촉진하고 전략적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며 포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ESG 이슈에 대한 협력은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내용은 PwC컨설팅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전략」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PwC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전략 \(Click\)](#)



## Hot Topic 2

#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이 주는 시사점

[저자: 이은영 삼일PwC경영연구원 Managing Director]

## 1.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주는 의미: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 2024년 정부 예산(최종안) 확정: 총수입 612.2조 원, 총지출 656.6조 원으로 확정
- 정부 추정 2024년 국세수입은 367.4조 원

2024년 재정운용 계획 (단위: 조 원)

	2023년	2024년		증감	
	본예산	정부안	최종안	국회 증감	전년 대비
총수입	625.7	612.1	612.2	0.1	(13.5)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관리재정수지	(58.2)	(92.0)	(91.6)	0.4	(33.4)
통합재정수지	(13.1)	(44.8)	(44.4)	0.4	(31.3)
국가채무	1,134.4	1,196.2	1,195.8	(0.4)	61.4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총수입은 세수입 +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세수부족은 국채 발행 및 기금운용 등으로 충당
- 경기둔화 및 자산 시장 하락에 따라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 축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대비 약 6.1조 원 감소 예상되며, 기업 투자 활성화 방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역시 감소 예상

+ 그 외 종합부동산세, 인지 세입 등은 증가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량 회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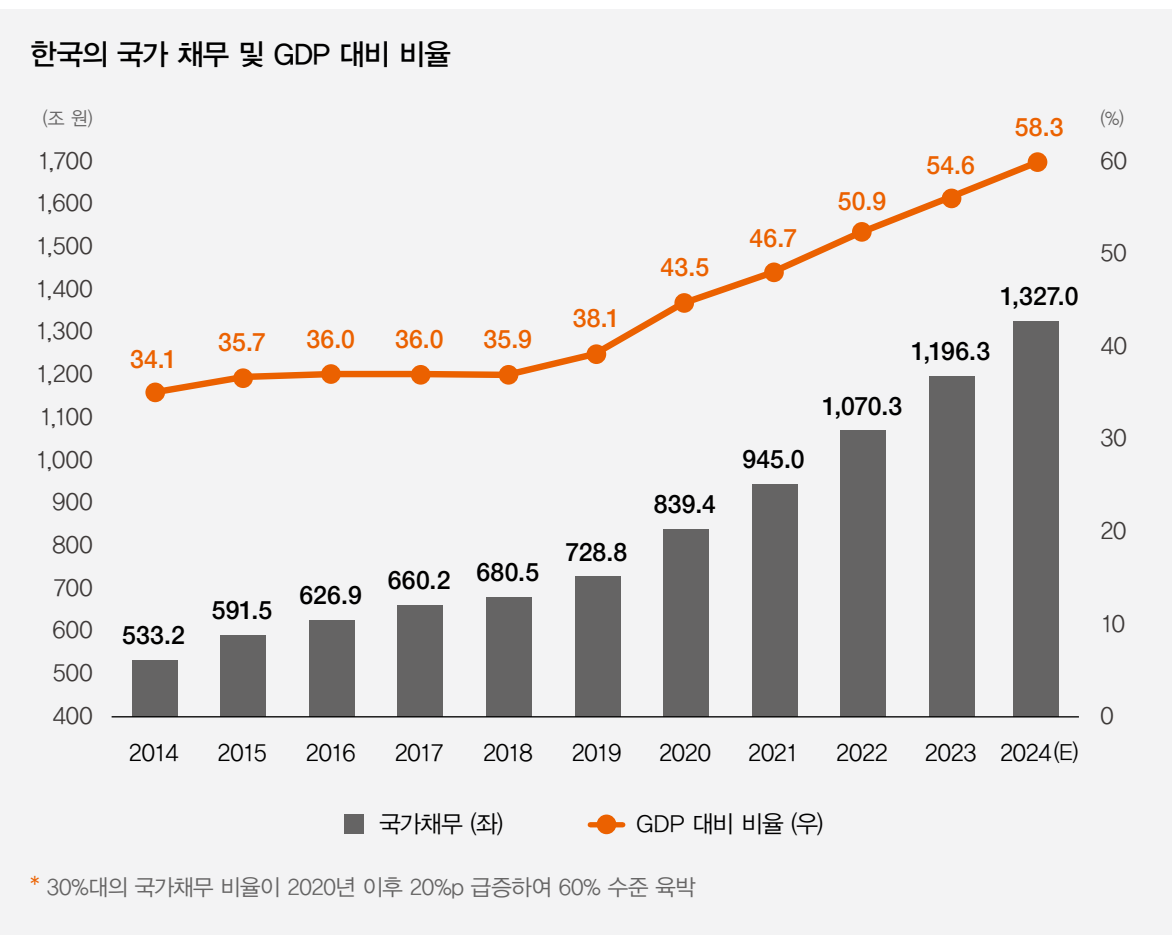
- 특히 **국채 발행의 경우**는 2024년 158.4조 원(순증 49.9조 원 + 차환발행 108.5조 원) 계획으로 전년 대비 7.3조 원가량 감소하고, 순증 규모 또한 11.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시장 공급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

+ 이는 코로나 이후 확대된 국채 발행량을 줄여 나가는 긴축 재정 기조 유지 (2021년 이후 감소세 유지)

- 한편, 세수입이 보수적으로 추산된 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내부지출용 36조 원 활용 여력을 고려했을 때 수입 측면에서의 추경 가능성 낮음

■ **2024년 총지출 예산(최종안)은 656.6조 원으로 2023년 638.7조 원 대비 +2.8% 증가**

+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 증가율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정부의 대외 건전성 확보 의지 재확인 (2023년부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중)  
 + 2027년까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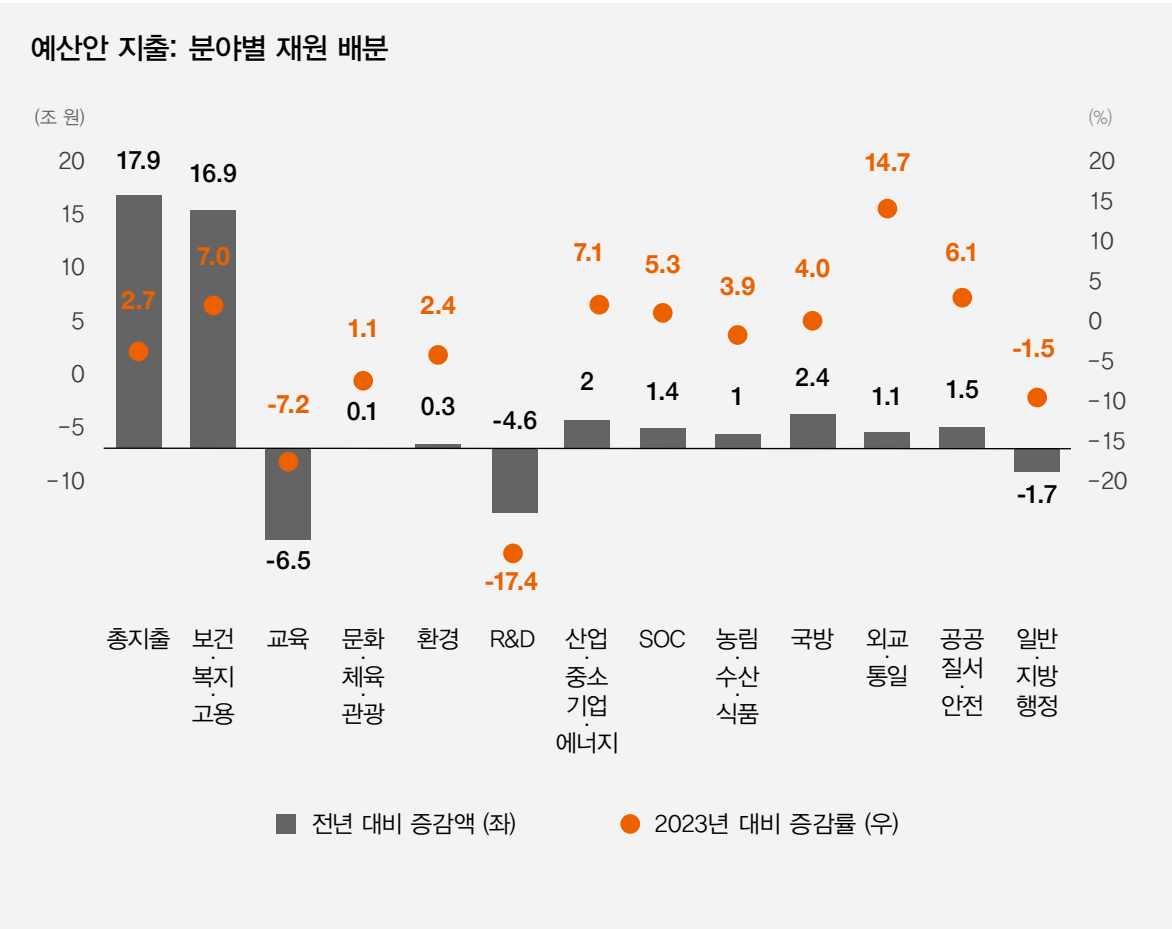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 2. 예산안 분야별 영향: 민생, 안보 및 안전 강조와 지출 효율화

### ■ 예산안(지출)의 분야별 자원 배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절대금액 측면) 총지출의 증가(17.9조 원)의 대부분(16.9조 원)이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
-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 외교·통일,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 안보 및 안전 분야 크게 증가

- + 외교·통일 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14.7%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7.1%), 보건·복지·고용 부문(7%)과 공공질서·안전(6.1%) 순임. 특히 에너지부문에서는 수력 대신 원자력 분야에 지원이 쏠리는 것이 특징적
- + 교육(-7.2%), R&D(-17.4%), 일반행정(-1.5%) 부문은 예산 감소
  - ① 교육: 학령 인구 감소로 유아, 초·중등 예산 감축 조정
  - ② R&D: 지출 효율화
  - ③ 일반 행정: 긴축 운영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3.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출 호조 & 물가안정

-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① **민생경제 회복**, ② **잠재 리스크 관리**, ③ **역동경제 구현**, ④ **미래세대 정책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함

□ 분야별 눈에 띄는 점은 물가안정,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관리,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연금개혁, 고용 보험 개편 등이 있음. 특히 **잠재 리스크 관리**가 눈에 띄

+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내외 경기 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비교: 2023년 하반기 vs. 2024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b>Part 1</b> 경제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투자 촉진</li> <li>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li> </ul>	<b>민생경제 회복</b>	<b>⊙ 잠재위험 관리</b>
<b>Part 2</b> 민생경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li> <li>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서민생활 안정</li> <li>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li> <li>내수·수출 회복 가속화</li> <li>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PF 연착륙</li> <li>가계부채 체계적 관리</li> <li>공급망 안정 확보</li> <li>금융 안정·건전성 제고</li> </ul>
<b>Part 3</b> 경제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li> <li>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등</li> </ul>	<b>역동경제 구현</b>	<b>미래세대 동행</b>
<b>Part 4</b> 미래 대비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고령화 대응</li> <li>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 생태계 강화</li> <li>공정한 기회 보장</li> <li>사회 이동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지속 가능성 확보</li> <li>인구·기후 위기 대응</li> <li>미래세대 기회 확대</li> </ul>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4. 2024년 정책 경제정책 방향이 주는 4가지 시사점

- ① 수출 중심 성장 ② 신성장 동력: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 ③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집중, ④ 부동산은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부동산 PF 등)에 중점

#### ① 정부의 관심 분야: 수출과 해외수주(방산, 인프라, 원전)

- 정부는 2024년 연간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 해외수주 750억 달러로 제시
- 정부는 수출 확대가 2024년 한국경제를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3% 수준으로 2023년과 유사하나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3년 0.9% 수준에서 2024년 3% 중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023년 -7.4%에서 2024년에는 +7~1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해외수주(방산, 인프라, 원전) 호조 예상: 연간 해외수주 목표치 2023년 \$350억 ... 2024년 \$570억으로 큰 폭 증가 예상

####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 정부 지원책

구분	주요 정책
연간 수출 7천억 불 조기 달성 지원	무역금융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공급(2023년 345조 원)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해외수주 570억 불 달성 지원	2027년 해외건설 400억 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추진
	(방산)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시, 세액공제율: 3~12% ... 6~18%</li> <li>•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2023년 20개소 ... 2024년 31개소</li> </ul>
	(인프라) 제2의 중동붐 확산을 위한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확대 등 밀착 지원 인프라 확충</li> <li>• 시공능력 평가 시 해외건설 고용 가점 및 해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li> </ul>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상반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Romania Cernavoda)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 수주 추진</li> </ul>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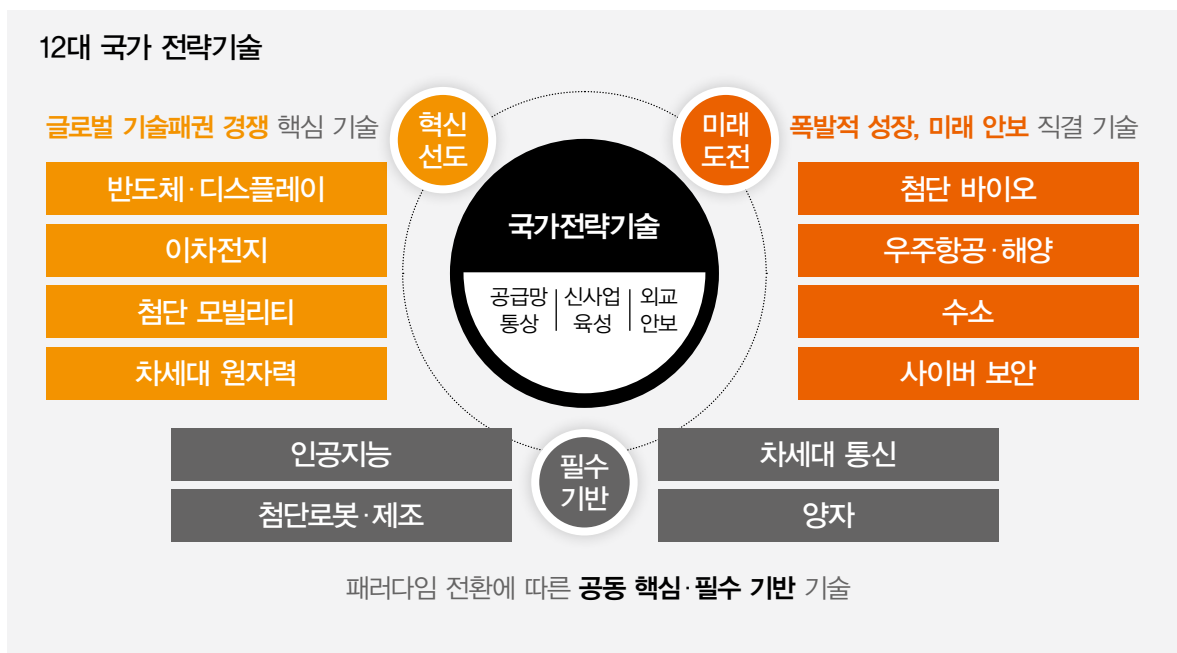
## ②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관심 분야(신성장 4.0 전략):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 반도체 외 신성장 관련해서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합리화' 정책 발표 예정으로 관심 지속
-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분기, 산업부), 사이버 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 조성(2분기, 과기정통부),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산업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적기 공급 방안 마련(하반기, 산업부) 등 신성장 4.0 전략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Appendix]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분야 선정 및 12대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분야 선정	
2023년	2024년 (추가)
시스템 반도체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사이버 보안
미래 모빌리티	우주·해양
친환경·에너지	차세대 원전
로봇	양자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내수 소비 부진 인정하는 가운데 위기관리(물가안정 등) 필요: 적극적 내수 부양보다는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부담 완화 노력을 하는 만큼 내수 관련 산업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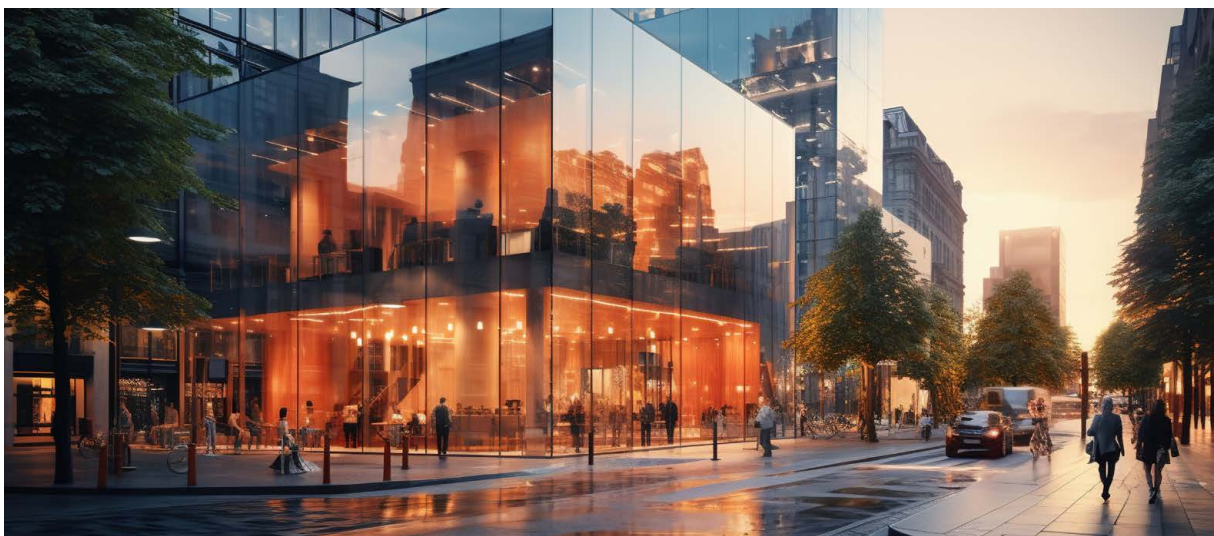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까지는 3%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 및 4월 10일 총선 등을 감안 시 민간 소비 회복은 쉽지 않을 듯

- + 정부 경비 감축 및 가계 부채 부담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부진한 것도 소비재 산업 전망에 부정적 영향 예상
- + 특히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통신서비스,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분야는 정부의 가격 인상 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산업은 다소 부정적일 수 있음

**물가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과제**

시기	정책 과제	부처
2024년 1분기	공공기관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 평가에 반영	기재부
	다소비 의약품 가격 주기적 공개	복지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연장 (~2026년)	과기정통부
2024년 2분기	지자체 공공요금 가격 안정 인센티브 강화	행안부
	주요 생필품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 시 정보공개 의무 제도화	공정위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부동산 부양 의지가 강하지 않는 만큼 건설 부문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적을 듯**

- 2024년은 건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비관적 견해가 우위. 더불어 대규모 부양책도 부재한 상황임 →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의미

**건설투자 활성화·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시기	주요 정책	평가
건설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 사업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 (2023년 25조 원 → 2024년 26.4조 원)</li> <li>• 공공부문 주택 공급 가속화 (주요 3기 신도시의 2024년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 추진)</li> </ul>	부동산 공급 측면보다 수요 부진이 문제 ↓ 해결 방안으로 부족
부동산 PF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 시장 위축 시 선제적 유동성 지원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조속히 시행)</li> <li>• 사업성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사업장은 LH 매입 정상화 검토</li> <li>• 사업성 일부 부족 시, PF 정상화 펀드(2.2조 원)을 통해 정상화 지원</li> </ul>	근본적 해결책 없음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추진</li> <li>• (상호금융) 여신 한도 규제 시행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li> <li>•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채권 매각 대상 확대</li> </ul>	제2금융권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

※ 기획재정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ESG

## ESG 국내외 동향

### 1. 미국식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

주요 국가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는 EU에 수입되는 품목에 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국 또한 2027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지난해 미국식 탄소국경세인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을 재발의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한국의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美 행정부 바뀌어도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CCA는 2022년 6월 민주당에 의해 첫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 경쟁’이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은 탄소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지만, 중국은 3배, 인도는 거의 4배 가까운 높은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상원은 국가별 탄소집약도 차이로 인해 공정경쟁이 어려워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CCA를 통해 얻어지는 재정수입의 75%를 미국의 탄소 절감을 위한 신규 기술에 투자하고, 25%는 개발도상국의 탈탄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A는 민주당에서 발의됐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명확한 실리가 있어 미국 공화당도 지지한 초당적 법률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교체된다 해도 CCA는 통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CCA 주요 내용: 광범위한 과세 대상, 원산지별 가중치, 톤당 55달러

CCA에서 기업이 눈 여겨봐야 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CCA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시사점
과세 대상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집약 산업(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12개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li> <li>- 2027년~2028년: 500파운드(약 225Kg) 제품</li> <li>- 2029년~2030년: 100파운드(약 45Kg) 제품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code 판정 중요</li> <li>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으로의 확대 대비</li> </ul>
과세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물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기준</li> <li>(i) 공장에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을</li> <li>(ii)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대상 품목의 총중량(톤)으로 나눈 값</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탄소 측정 중요</li> <li>원산지 국가의 배출 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추가로 고려 (별도 발표 예정)</li> </ul>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li> </ul>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당 55달러,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 실질 5%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약 90달러 육박할 것으로 추정</li> </ul>
신고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1월부터 적용, 연간 1회</li> <li>2026년 6월 30일 신고 및 9월 30일 납부</li> <li>최빈국 면제, 수출 시 환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세 법안 발표 이후 Update 예정</li> </ul>

\* HS Code: Harmonized System, 전 세계 통계·관세 목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Code

먼저, 과세 대상은 HS Code 기준의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해당하는 12개 품목(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입니다. 현재는 12개 품목이지만 점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이 완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지난해 약 24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배출한 총 온실가스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약 172억 원(24만 톤 X 55달러 X 환율 1,300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봐야 하는 내용은 CCA가 원산지 국가의 탄소배출집약도와 미국의 집약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CA 발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인도 등과 같이 미국보다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패널티 형식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율입니다. CCA가 도입되는 첫해에는 관세로 55달러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률이 매년 5% 수준까지 오르면, 2030년까지 톤당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CCA, EU CBAM보다 도입 시기 빠르고 적용 범위 넓어

EU CBAM에 비해 미국 CCA가 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U CBAM 대비 미국 CCA의 큰 특징은 과세 적용 범위입니다. EU CBAM보다 미국 CCA가 과세 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U도 점차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향후 완제품까지도 과세 대상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U CBAM은 2033년까지 무상할당비율\*을 고려하고, 원산지에 따른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CCA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어 기업들은 당장 올해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EU CBAM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와 연동해 무상할당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할당 비율만큼 인증서 수량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EU ETS 무상할당비율 적용은 2034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 EU 탄소국경세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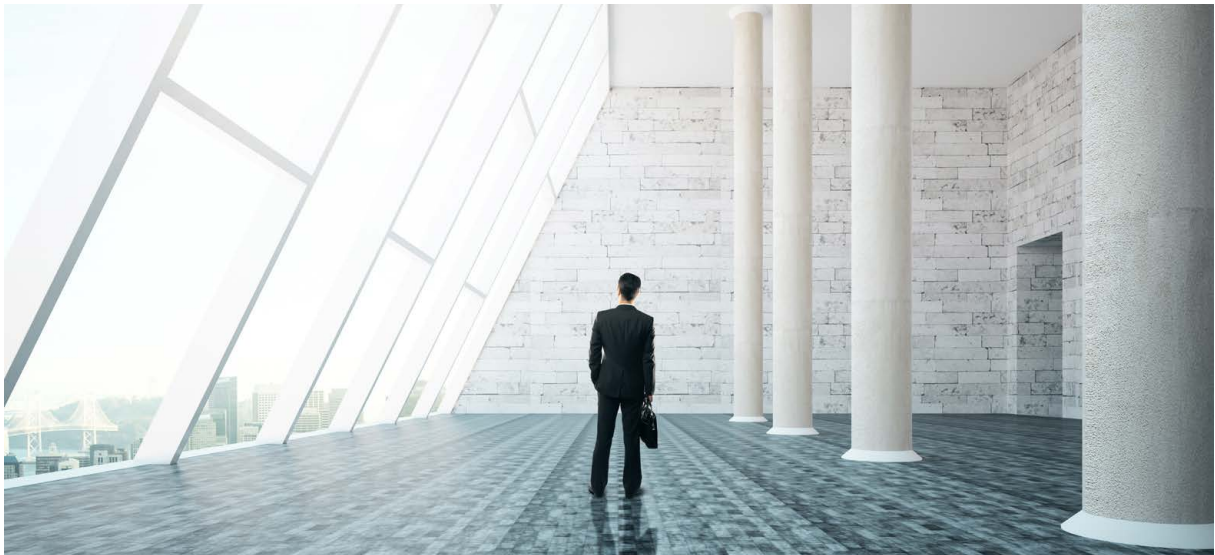
구분	미국	EU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집약 산업(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12개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li> <li>- 2027년~2028년: 500파운드(약 225Kg) 제품으로 확대</li> <li>- 2029년~2030년: 100파운드(약 45Kg) 제품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10월~2025년 12월 시범기간, 2026년 1월 시행-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6개</li> <li>- 추가: 철광석 등 원료 제품 및 스크류, 볼트 등</li> <li>- 제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암모니아 (2026년 도입 예상)</li> </ul>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 탄소배출량</li> <li>원산지국 산업·제품 탄소배출 집약도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 탄소배출량 (EU 무상할당비율 고려)</li> <li>수출국 탄소세 차감</li> </ul>
탄소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당 55 US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주 탄소배출거래제(EU-ETS) 가격 연동</li> </ul>
도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 신고</li> <li>Annual report, 납부 9월 3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10월, 본격 시행 2026년 1월</li> <li>분기별 신고, 연 1회 추가 납부·환급 (5월31일까지)</li> </ul>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 탄소 측정, 생산지·생산공정 정보 제공</li> <li>HS Code 분류</li> <li>IRA, 전략 물자, 생산지(원산지국 집약도)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 탄소 측정, 생산지·생산공정 정보 제공</li> <li>ETS 가격 변동 추이</li> </ul>

## 미국 통상규제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해야

미국 CCA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최종 법안이 나올때까지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도입 시기가 당장 내년인 만큼 발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이 염두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여러 통상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국가별 집약도가 CCA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생산지를 운영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물류비, 공급망, 탄소국경세 등을 검토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규제는 기업에게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의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 영상 보러가기

삼일PwC ESG Platform은 2025년부터 톤당 55달러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진 미국식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Click\)](#)

## 2.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최종 합의 내용

### EU CSDDD, 국내 기업에 직간접 영향

지난달 14일 유럽연합(EU)의 이사회와 의회는 CSDDD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인권과 환경 분야의 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U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 및 Non-EU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EU 수출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 업체까지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 CSDDD 제정 배경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급망 인권 관리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2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유럽 일부 국가\*3들이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을 시행했고, EU 집행위는 통합적인 실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CSDDD 초안을 2022년 2월 발표했습니다.

EU의 ESG 규제의 뿌리가 되는 'EU 그린 딜'\*4 또한 CSDDD 제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CSDDD는 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Non-EU 기업에도 공급망 실사 의무를 적용해 보다 폭넓게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의 공급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2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3 영국-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 프랑스-기업경계 의무화법(2017년), 네덜란드-아동노동 실사법(2022년), 독일-공급망 실사법(2023년)

\*4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로드맵

### EU CSDDD 적용 기업은?

#### 최종 합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EU CSDDD 적용 대상 기업

구분	내용
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수: 500명 초과</li> <li>• 매출: 글로벌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초과</li> </ul>
Non-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수: 해당 사항 없음</li> <li>• 매출: EU 역내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초과</li> <li>- EU 집행위가 지침 적용 대상인 Non-EU 기업 리스트 공개 예정</li> </ul>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deal to protect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 주요 쟁점 사항은?

지난 2년간 CSDDD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공급망 범위, 기후변화 관련 조항, 그리고 실사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실사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유럽의회와 규제 완화에 집중 한 EU 이사회 간 오랜 협의 끝에 정리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집행위가 제출한 초안에서는 기업 가치사슬 내 전체 공급망을 실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최종 합의 내용에서는 업스트림(Upstream)과 일부 다운스트림 활동(유통 또는 재활용)만을 공급망 실사 범위로 정했습니다. 또한, 동 지침에 적용받는 기업들이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의무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도 기관 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최종 합의를 통해 금융업은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EU 이사회는 향후 영향 평가를 통해 금융업도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EU CSDDD 대상 기업은 자사와 직·간접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지침에 따른 의무 사항

- **실사 의무 관련 기업 정책 수립**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정책 수립
- **부정적인 영향 식별**  
자사 및 공급망 전체에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예: 예방 조치 계획 마련 등)
-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 조치**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행
-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인권과 환경 관련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공급망 내 모든 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모니터링**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완화, 해결 또는 최소화됐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 수행
- **정보 공개**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 PwC, Corporate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 - A focus on your entire value chain

## 위반 시 제재는 어디까지?

위반 시 제재 수준은 EU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제재 범위에는 기업 순매출의 5% 수준의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경 및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사에는 거래 중단 등 비금전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선제 대응으로 공급망 경쟁력 확보해야

최종 합의 내용의 구체화 및 추가 기술 회의를 통해 CSDDD 최종 문서가 완성되고, 해당 문서에 대한 유럽 의회와 EU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 문서가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U회원국은 18개월 내에 EU CSDDD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하고, 국내법 전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U CSDDD는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이지만 규제에 선제 대응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3. 수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만능 키’

#### ‘탄소가 곧 비용’ 강화되는 탄소 규제

기업에게 탄소는 곧 비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품목(철강, 전력,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탄소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해운업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U ETS)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EU 국가의 항구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은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EU는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에도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EU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리퓨엘 EU(ReFuelEU)’ 법안을 통과시켰고, 항공사들은 2025년부터 수소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탄소 관련 규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확장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탄소 관련 일부 규제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배출한 탄소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친환경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 솔루션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EU ETS 해운업 대상 2024년부터 시행, ReFuel EU 2025년부터 시행

#### 경제성 높고 여러 산업 활용 가능 ... ‘수소시대’ 등장

수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화석연료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이 배출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수소는 연소 후 나오는 부산물이 물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소는 석유, 천연가스, 물에서 얻을 수 있는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수소로 얻은 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에서 얻은 에너지보다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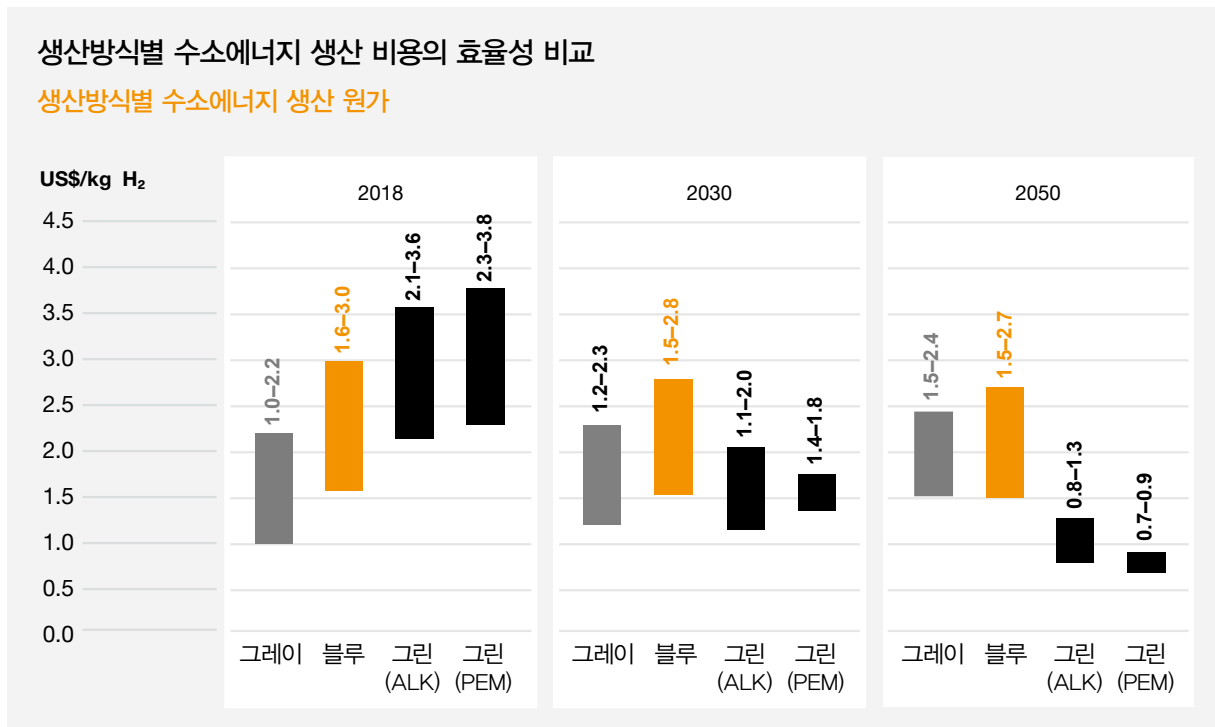
수소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 공급이 불안정하고, 태양광과 바람 등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저장하고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수소를 운반할 때 암모니아를 활용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서도 수소 운반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소는 미래 경제성이 높고,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수소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연소되면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상업 및 주거용 난방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항공, 승용차, 기차 등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수소 환원 방식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이 없는 철강제품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예상됩니다. 석탄, 천연가스, 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Power to X 기술을 적용하여 수소를 통해 암모니아, 메탄올, 휘발유 등 다양한 합성연료와 플라스틱의 생산이 가능하여,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 화학 산업도 동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소를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 2030년, 수소 경제성 확보 전망

수소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비즈니스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PwC의 수소 전문가 위르겐 피터자임(Jürgen Peterseim)은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수소 생산단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wC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를 통해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수전해 기술의 발전, 재생에너지 생산원가 감소, 규모의 경제 등으로 2030년대에는 현재 가장 많이 생산 및 사용되고 있는 그레이 수소보다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수소라도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 보다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의 단가를 낮춰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삼일PwC, 밝아오는 그린수소의 미래

### 생산 방법에 따른 수소 종류

구분	특징
그레이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인 천연가스 등에서 수소 추출</li> <li>생산 공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발생</li> </ul>
블루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레이 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소 추출</li> <li>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li> </ul>
그린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력, 태양열,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 수소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하는 방식에 따라 'ALK' 수전해 방식과 'PEM' 수전해 방식 등으로 구분</li> </ul> </li> <li>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음</li> </ul>

수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럽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는 EU의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다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량 생산과 경제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또한 수소 경제성 확보와 대량 생산 측면에서 정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6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10년 안에 kg당 1달러로 낮춰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소 샷(Hydrogen Shot)'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청정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달러가량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의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등 탄소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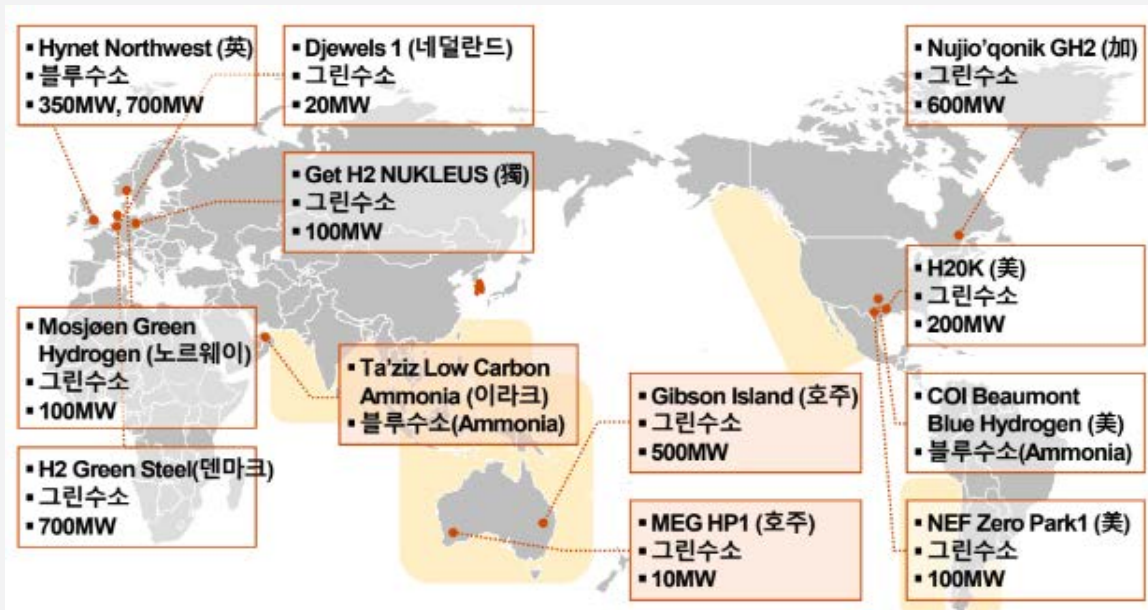


## 공급처 확보 위해 민관 협력 필요

한국의 수소 비즈니스는 전체 밸류체인 과정에서 생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려워 그린 수소를 자체 생산하기 어렵고, 탄소를 포집해 저장할 땅이 부족하다 보니 CCUS 기술을 활용한 블루 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수소 생산이 어렵습니다.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뤄져야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것이 탄소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은 수소 생산을 위한 추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중동, 동남아, 호주 등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수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소 해외 거점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해외 수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2024년 글로벌 주요 수소 개발 프로젝트



\* 미국 서부, 호주, 아시아, 중동 지역이 국내에 조달가능한 청정수소 해외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

※ 삼일PwC

## 기업 역량 파악해 수소 전략 수립해야

기업은 수소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자사 역량을 파악해 수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소 산업의 핵심은 기술과 함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은 수소 밸류체인 각 구간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기업이 가진 기존 역량에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거나, 기업 간 협업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암모니아, 메탄올과 같은 화학 물질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 간 협력,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M&A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소 전체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PwC



기업은 국가별 정책과 규제 동향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수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수소 시장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수소 전략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생산 부문의 Global Leading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기술 선도 (전기분해, 광분해 등)</li> <li>-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접근</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에너지 분야 과감한 투자 추진(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1kg에 \$3 세액공제 제공(생산비용 \$8 수준)</li> <li>- CCUS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 확보</li> </ul> </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부문 기술적 선도 지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 운송 분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요 수요국</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조달 인프라 투자·연구와 국제협력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액화, 선박·트레일러 운송, 암모니아 전환 등</li> </ul> </li> </ul>

또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보다 수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해 국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의 리더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혁신을 이뤄나가야 할 때입니다.





# GAAP

회계

## 2023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심사·감리결과 및 주요 지적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6: 매출 및 매입 과대계상 (유상사급 회계처리 오류)

#### ①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단조가공 및 고주파 열처리를 수행하는 회사로 연간 단조회사에서 제작한 SHAFT 단조품을 매입하여 이를 열처리하거나 CNC선반 등 공작기계를 통하여 가공 및 열처리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발주업체에 부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발주업체로부터 규격화된 원재료를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음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발주서 및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제공받아 자체 생산계획을 세우고, 자체 생산계획에 따라 발주업체가 지정한 원자재 공급업체에 필요한 원자재를 발주업체의 ERP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발주하며, 원자재 공급업체는 회사의 창고에 직접 입고함. 제공받은 원재료 및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발주업체와 사전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총액으로 수취·발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제품 매출가격에서 원재료 매입대금을 차감한 후 순액으로 정산 받고 있음

회사와 발주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① 회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발주업체의 동의 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② 제공받은 원재료 소유권은 원재료 대금을 완제한 때 회사로 이전된다는 약정이 있으나, 실제로 원재료 대금의 정산은 제품 납품 이후에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대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회사가 원재료를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③ 원재료 구매가격과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사전에 합의된 가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원재료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회사에 소유에 따른 주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잘못 인식하여 매출 및 매입을 과대계상함

## ②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주문자재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등 처분에 제약이 있는 등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 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함

## ③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8:

###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수탁판매 거래 회계처리 오류)

#### ①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수영복 및 관련 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제품을 주로 마트, 백화점 등의 수탁판매사와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며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수탁판매사와의 매출 거래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관행에 따라,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수탁판매사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함

#### ②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탁판매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탁판매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수수료(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함

#### ③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57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6: 이연법인세 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 ①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외 11개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비상장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함.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내 외감대상법인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22% 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나머지 비외감대상법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배기업으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 인식을 하지 아니함

### ②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전액(100%)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부담할 법인세액이 없음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률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간과함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③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번호: 3809) 「2023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안내 및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4년 중점 점검분야 재안내 (2024.1.12)」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Click)



#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1.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 ①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 위반 사례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야 함

#### 위반 사례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 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함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③ 감사인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 위반 사례

- 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 ②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 위반 사례

- 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를 미이행
- G사 대표이사는 주총,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3. 향후 계획

- 금감원은 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법규 및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최근 개정내용\*의 충실한 숙지 및 이행 등을 통해 회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 마련 (2023년 12월 29일 금감원 보도자료)

- 한편, 2023년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1. 개요

-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 등 발생 가능성 상존
-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 2.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 ①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 매출액 과대계상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미반영)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총공사예정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축소 산정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 (공사진행률 상향조작) B사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상향조작

### ② 발생원가의 과대계상 ▶ 매출액 과대계상

-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 C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
-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 D사는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

\* (전산 조작 내용) ① 사업 종료 후 원가를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원가로 계상, ② 계약 전 발생원가 및 선급금 등을 해당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의 원가로 처리

### ③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 매출액 과대계상

-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 부당가산) E사는 발주사가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매출 과대인식

- (지연배상금 미차감) F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나 계약금액에서 지연 배상금을 미차감

#### ④ 우발부채, 총당부채 누락

- (우발부채 미공시) G사(시공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PF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음
- (총당부채 과소계상) H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총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동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3. 결산 시 유의사항

#### ■ 공사에정원가 변동 여부 확인 및 반영

- 공사에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계약금액 변경은 계약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

#### ■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 및 공시에 유의

-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총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 공시

#### ■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미진행분),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

#### ■ 우발부채 공시 및 총당부채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지급보증과 약정사항 등 다양한 우발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 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총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 ■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외부감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외부감사가 수행되도록 협조

### 4. 향후 계획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한 바 있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2024년 중 중점심사 실시 예정

#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 1. 개요

- 2023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1,212개 사로 전년 대비 3,693(9.8%)개 사 증가하였으나, 회계제도 보완 결과 20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개 사로 전년(대비 309(15.6%)개 사 급감하였음
-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 외감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회사가 감소했고, 절반을 상회했던 상장법인 지정비율도 크게 하락

## 2. 2023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외감대상 현황)**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말 37,519개 사에서 2023년 말 현재 41,212개 사로 3,693개 사(9.8%) 증가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642개 사로 전년 대비 100개 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4,411개 사로 전년 대비 3,536개 사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상장)	합계
	주권상장				비상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022년 (비중)	819 (2.2)	1,591 (4.2)	132 (0.4)	2,542 (6.8)	34,411 (91.7)	36,953 (98.5)	566 (1.5)	37,519 (100.0)
2023년 (비중)	833 (2.0)	1,680 (4.1)	129 (0.3)	2,642 (6.4)	37,947 (92.1)	40,589 (98.5)	623 (1.5)	41,212 (100.0)
증감 (증감률)	+ 14 (+ 1.7)	+ 89 (+ 5.6)	△ 3 (△ 2.3)	+ 100 (+ 3.9)	+ 3,536 (+ 10.3)	+ 3,636 (+ 9.8)	+ 57 (+ 10.1)	+ 3,693 (+ 9.8)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7,645개 사(67.1%)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303개 사(17.7%)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6,264개 사(15.2%)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

### 3. 2023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지정현황)** 2023년 말 현재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개 사로 전년 대비 309개 사(15.6%) 감소
-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년 6월)」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

#### 2023년 지정사유 합리화 주요 내용

- **(직권 지정)** 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②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 (연결 → 별도),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폐지
  - ①, ② 2024년도 재무기준 직권지정 177개 사 감소
  -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6개 사 지정 해제
- **(주기적 지정)**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
  - 2024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 92개 사 감소

- **(지정 비율)** 2023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축소
-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사유를 지속합리화한 결과 절반을 상회(2021년 51.1%)했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신 외감법 도입 초기수준(2019년 34.7%)으로 하락
- **(주기적 지정)** 2023년 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개 사로 전년 대비 106개 사(15.7%) 감소
- 주기적지정 대상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감소 폭이 주권상장법인을 크게 상회
- **(직권 지정)** 상장 621개 사(유가 169개 사, 코스닥 390개 사, 코넥스 62개 사), 비상장 678개 사 등 총 1,299개 사를 직권 지정하여 전년(1,295개 사) 대비 4개 사(0.3%) 증가

###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



# Tax

(Korean Tax Update - Samil Commentary, February 2024)

# Tax News

## 일반 R&D 증가분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정부는 다음과 같이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임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제외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50%	60%
중견기업	40%	50%
대기업	25%	35%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 개별 소비세 등 70% 감면 (경감한도: 개별소비세 100만 원·교육세 30만 원·부가세 13만 원)

##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2024년 1월부터 적용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이 2023년 12월 27일 발효되어,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됨.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고정사업장

-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6개월 초과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 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현지 과세 가능
-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의 경우 상대국에서 183일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용역 (자문용역 포함) 제공 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현지 과세 가능

### ■ 배당·이자 및 사용료 소득

- 한쪽 영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영역의 거주자인 수익적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 ■ 양도소득

-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단, 부동산 주식(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초과) 및 대주주 주식(양도 직전 12개월 중 어느 시점에라도 지분율 25% 이상 보유)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 ■ 혜택의 제한

- 비과세, 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는 조약남용 방지 규정 포함 (다자협약 제7조 제1항과 조문 동일)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을 발표함.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 후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2024년 1분기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국세청, 불복사건 기한 내 처리율·평균 처리일 수 대폭 개선

국세청은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 수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올해부터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힘.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서 국세공무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음.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2023년 2월부터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 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과세사실판단지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수입 잠정실적 발표, 예산 대비 56.4조 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이 344.1조 원으로 전년 실적(395.9조 원)대비 △51.8조 원이 감소했다고 밝힘. 예산(400.5조 원) 대비로는 △56.4조 원 감소하였음.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2022년 4분의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23.2조 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 대비 △14.7조 원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7.9조 원 감소하였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을 2023년 예산(390.3조 원) 대비 △8.7% 감소한 356.1조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 원으로 전망됨. 기획재정부는 2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함

## 최신 개정 동향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부터 10%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4154호, 2024. 1. 18.)

### 지방세법 시행규칙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 분의 2에서 1만 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 1. 22.)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0%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037호, 2024. 1. 24.)

## 최신 예규·판례

### 감액 합의에 의해 수령한 주식 매매대금 감액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 ■ 쟁점사항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종전 주주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 하였으나,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 취득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을 감액 하기로 종전 주주와 합의한 경우, 주식 매매대금을 감액한 금액(쟁점 감액금)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 가액과는 무관한 보상금 등의 성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법법 §15 ① 및 법기통 15-11...1) 아니면 쟁점 감액금을 주식 매매대금의 감액 성격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계상한 주식 취득가액(법령 §72 ② 1호) 에서 쟁점 감액금을 차감하는지 여부임

#### ■ 회신 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당시 주식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작성 된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을 감액한 쟁점 감액금을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회신 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 감액금을 주식 매매대금과는 구분되는 손해 또는 손실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당초 약정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주식 매매대금의 감액 성격 으로 보아 주식 취득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판단됨 (사전-2023-법규법인-0708, 2023. 11. 27.)

#### ■ 시사점

- 기존 유권해석도 내국법인이 영업양수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 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감액된 매매대금을 손해 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감액된 매매대금은 익금이 아닌 영업양수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을 차감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사전-2022-법규법인-1306, 2023. 3. 10.), 심판원도 사실상 매매 가액 사후정산 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손해배상 금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고 있음 (조심2013서2201, 2014. 1. 20.)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식을 양수한 후 종전 주주로부터 명목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 이 주식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 또는 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조정하 는 감액금 성격인 경우에는 주식 취득가액과 구분되는 별개의 보상금 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초의 주식 취득가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며, 다만 주식 취득 후 사후적으로 수취 한 금전이 주식 매매거래와 구분되는 보상금 성격인지 또는 매매대금의 사후조정 성격인지는 매매계약 과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한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 쟁점사항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는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출자비율(20% 미만·20~50% 미만·50% 이상)에 따라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30%·80%·100%)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법 §18의 2 ①),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한 명목상의 출자비율(42%)에 따라 익금불산입률(8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자비율(62%)에 따라 익금불산입률(100%)을 적용하는지 여부임

### ■ 회신 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출자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자비율(62%)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률(100%)을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배당금 지급법인과 수령법인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입법취지상 피출자법인의 자기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출자법인의 익금불산입율이 상이해지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 청구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배당청구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유권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사전-2023-법규법인-0747, 2023. 11. 23.)

### ■ 시사점

- 이번 유권해석은 배당청구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2006. 3. 27.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 2-17의 2-2), 이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주식은 의결권의 유무가 아니라 배당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그 포함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매입한 자산은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법령 §72 ② 1호), 출자 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법령 §72 ② 4호의 2), 이번 유권 해석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 매입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 취득으로 보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매입가액의 차액(이하 '전환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법령 §72 ② 1호)으로 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전환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과 전환권 행사로 소멸하는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다는 관점으로, 기업회계상 전환권 행사로 인해 계상한 전환이익은 임의의 평가이익(법법 §18 1호)에 불과한 미실현이익이므로 세무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 (기준-2023-법무법인-0120, 2023. 11. 28.)

### ■ 시사점

-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닌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시가로 하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나(법규과-4233, 2006. 10. 4.), 이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통상적인 전환권 행사(상법 §516 ② 및 §350 ①)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따른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한 경우이므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사유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출자전환이 아닌 통상적인 전환권 행사인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2023. 10. 20.), 내국법인·거주자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을 국외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법인통 92-129...4 ① 1호 및 소득통 126-0...1 ① 1호)

##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의 접대비 또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 쟁점사항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게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한 모든 고객에 대해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법령 §11 1호)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회신하고 있음 (서면-2023-법인-0155, 2023. 8. 21.)

### ■ 시사점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주·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또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할인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할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법법 § 52)을 적용하고 기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할인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규정(법법 §25)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청 회신사례가 있으며(법인세과-458, 2010. 5. 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6. 11. 9.), 심판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금액 확대를 위해 사전에 정해진 우대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의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결정례가 존재하므로(국심2004중4722, 2005. 4. 18.),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 PwC's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이사회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3년은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비교적 평화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위기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긴장감과 무역 갈등은 심화되었고, 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력망이 불안해졌으며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력도 가중되었다. 또한 새로운 규제들과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은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이사회는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PwC의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는 15년이 넘게 미국의 주요 상장사 이사회들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2023년에는 600명이 넘는 상장사 이사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들이 변화하는 속도는 여전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저항은 많은 이사회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자체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긍정적인 설문 결과도 있다. 주주관여에 대한 이사회들의 견해는 전보다 발전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사회들의 다양성도 많은 진전을 보였다.

변화에는 종착점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는 계속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이사회에 필요한 통찰과 모범 사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사회들이 직시해야 할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함께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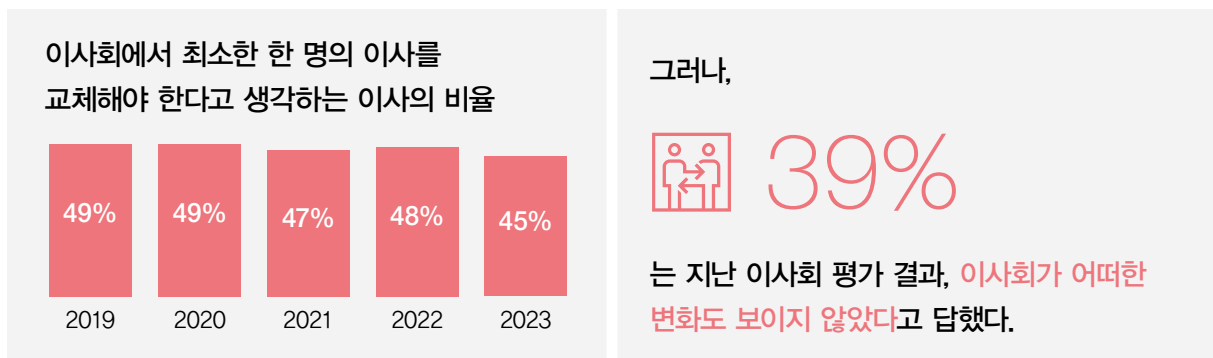


## 1. 이사회 구성원 교체

이사들은 동료 이사들에게 비판적이지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이사회 평가 절차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동료 이사들의 성과에 대한 이사들의 비판이 반드시 이사회 구성 변화로 이어지는 않았다. 이사회 성과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평가 프로세스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사회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 이사를 재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한 이사는 11%에 불과했다.

이사회 교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3년 S&P 500 기업의 연간 이사 교체율은 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사들은 비효율적인 평가 프로세스와 어렵고 불편한 논의를 시작하기 꺼리는 이사회 리더십을 이사회 구성원 교체의 두 가지 걸림돌로 꼽았다.



※ Source: PwC,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2019-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2023년에 이사의 75%는 이사회가 실적이 저조한 이사를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이사회 구성원 교체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사회의 평가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사일수록 변화를 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

#### ■ 이사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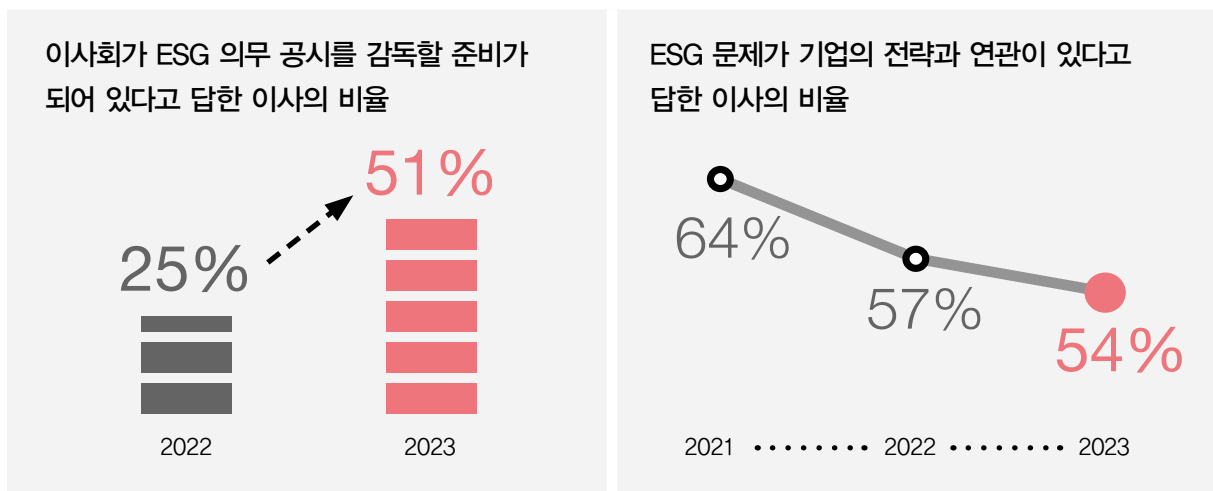
- 현재 이사회·위원회 평가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개별 이사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 평가 진행을 고려한다.
- 평가 목표의 설정 및 재설정, 특히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 피드백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 의장이나 독립적인 선임이사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한다.

## 2. ESG 감독

많은 이사들이 ESG 공시를 감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절반만이 ESG와 기업 전략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다.

설문 결과, 절반이 넘는 이사가 향후 ESG 의무 공시 사항을 감독할 이사회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2년 25%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ESG 문제가 기업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적었다.

특정 ESG 주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규모, 지리적 위치, 산업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러나 위험과 기회가 실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이사회는 기업 전략과 관련된 ESG 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전략적 대안과 활용 가능한 기회에 대해 경영진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이해관계자(정부, 투자자 및 주주행동주의자)는 ESG 안건에 대해 반발하기도 한다.



※ Source: PwC,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2021-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고 포괄적인 범주의 ESG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이사들은 지쳤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시 관련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무 공시 감독에 대한 이사회의 확신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이사들은 여전히 주요 ESG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40%는 이사회가 탄소 배출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7%는 이사회가 기후 위험 및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ESG 공시 절차와 통제를 마련했지만 이사회는 기업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응답자의 3분의 1(34%)은 ESG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및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진이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사회 의 과제

- 이사회 안건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보다 광범위한 'S'와 'G' 문제를 포함한다. 전체 이사회와 위원회 간의 책임 배분이 적절한지 논의한다.
- 모든 회의(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와 연례 전략 회의에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한다.
- 경영진 중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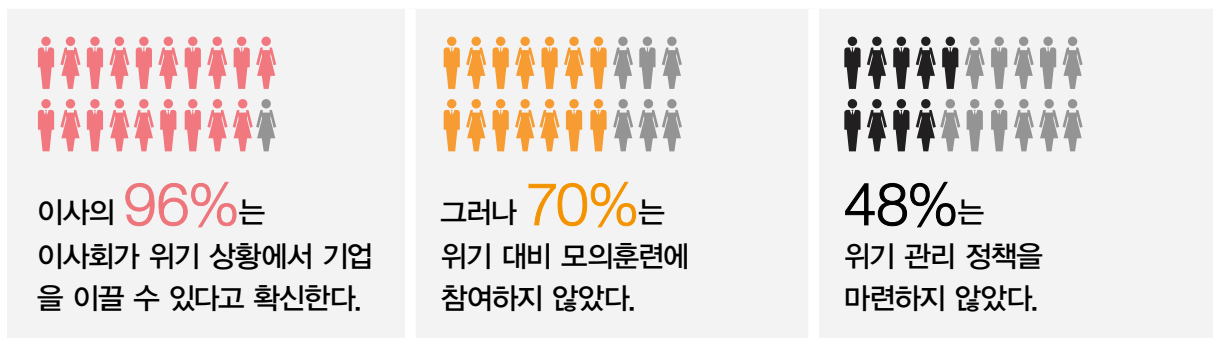


### 3. 위기 관리

이사회는 위기 대비에 대해 자만할 가능성이 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이사는 소속된 이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위기 대비 모의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48%는 서면화된 위기 관련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32%는 위기 상황에서 이사회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이사회는 위기 관리와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 리더들이 팬데믹과 세계적인 격변을 헤쳐 나가며 다음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 Source: PwC,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전 지구적인 보건 및 지정학적 위기를 최근에 겪었지만, 경영진이 4년 전에 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래에도 위기가 있을 것이며, 다음 위기는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미래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위기 대비는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모의훈련은 모든 기업의 위기 대응 준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지금이 바로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일 수 있다.

##### ■ 이사회의 과제

- 위기 대응을 연례 전략 회의 안건에 포함한다. 경영진의 계획과 보고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 경영진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얼마나 자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지 검토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모의 훈련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도록 권장할 것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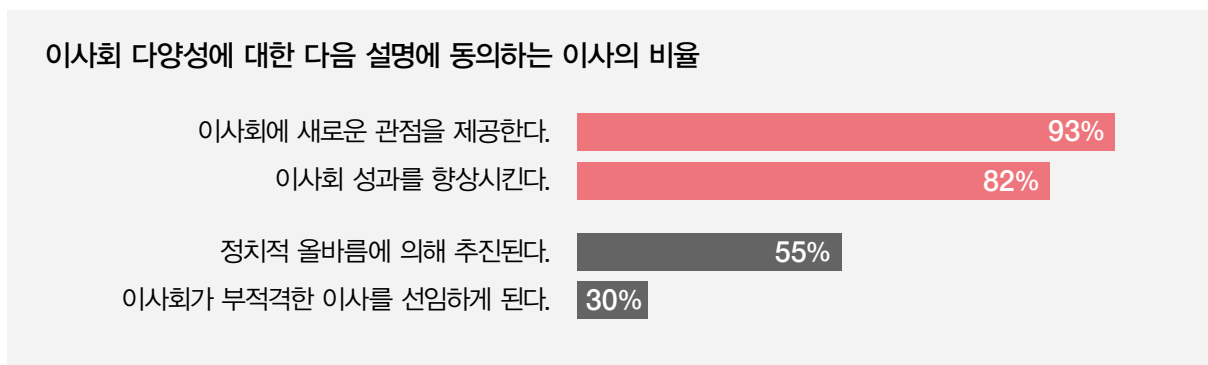
## 4. 이사회 다양성

이사들은 이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관련 문제가 정치화되었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이사는 다양성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며 이사회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절반 이상의 이사들은 다양성에 대한 노력이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주도된다고 믿는다. 이사 중 약 3분의 1은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자격이 부족한 후보자를 이사에 선임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연구가 이사회 다양성과 사업 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는 다양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권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S&P 500 기업의 신입 이사 중 거의 3분의 2가 다양성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사 교체율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

\*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말과 용어의 사용에서 모든 종류(인종·민족·언어·종교·성별 등)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신념 또는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



※ Source: PwC,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사진 구성이 주는 이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특히 지난 2년 동안 많은 이사회가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는 조치를 취했다. 71%의 이사회는 기업이 주주총회 위임 권유 신고서(Proxy Statement)에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했다고 말했고, 66%는 퇴임하는 이사 자리에 이사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이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사회는 신규 이사 후보자를 물색할 때, 다양한 후보자 그룹을 마련하고 이사회 승계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사 중 15%만이 향후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사회 승계 계획을 수정 혹은 변경했다고 답했다.

## ■ 이사회 의 과제

- 이사 후보자 풀(Pool)을 확대한다. CEO 및 CFO 이외의 직책에 있는 현직 임원을 포함한다.
- 신입 이사를 위한 입문(Onboarding)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면, 이사회에 신규 선임된 이사회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인 이사에게는 업무를 위한 지침과 관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5. 경영진 보상

경영진 보상 수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에 비해 경영진이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수가 감소했다. 기업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진의 보상을 기업의 성과와 연결하고 있다. 2023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경영진 보상을 지지하는 주주가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진 보상 프로그램 설계와 주주 기대 사이의 균형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신뢰와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23년부터 미국에서 의무화되는 보상과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공시(Pay Versus Performance Disclosure Rules)는 상장기업이 경영진 보상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동 규정에 따라 경영진 보상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공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이는 보상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와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공시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와 다양한 성과 시나리오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



※ Source: PwC,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7,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일반적으로 경영진 보상은 주로 기업의 성과에 좌우된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보상 프로그램이 부당 행위를 장려하지는 않는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단순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유의하면서, 보상이 기업 가치를 강화 혹은 악화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이사회는 경영진 보상 패키지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상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공시로 인해 경영진 보상이 기업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제공될 것이므로, 연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주의를 끌 수 있다.

### ■ 이사회 의 과제

- 경영진 보상 관련 공시에 대해 이해하고 질문한다.
- 보상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보상이 합리적이고 전략과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기업 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이다.
-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받는 방식과 거기에 보상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이해한다. 보상은 올바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잘못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상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어떤 주주관계 활동을 하는지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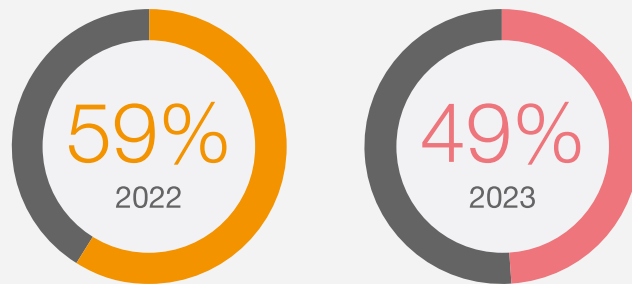


## 6. 사이버 보안 감독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사회들의 확신 수준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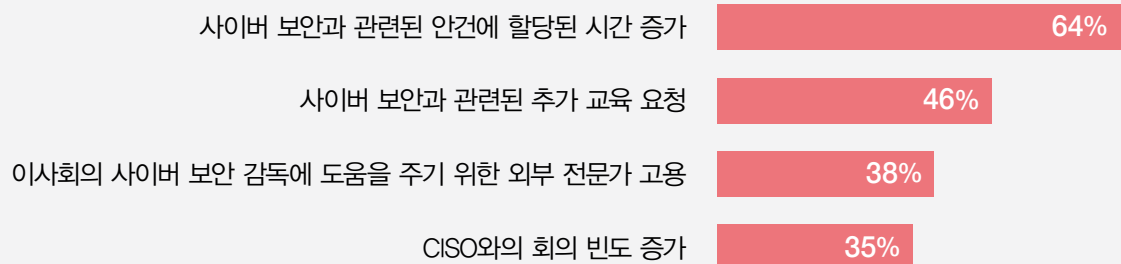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을 이사회들의 어려운 감독 과제로 인식하는 이사의 비율은 2022년 59%에서 2023년 49%로 감소했다.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진은 사이버 보안 관련 논의와 공시의 빈도 및 수준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국의 SEC는 2023년 7월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개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전략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례 공시를 의무화한다.

사이버 보안을 이사회들의 어려운 감독 과제로 인식하는 이사의 비율은 감소했다.



※ Source: PwC,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2022-2023

### 지난 1년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



※ Source: PwC,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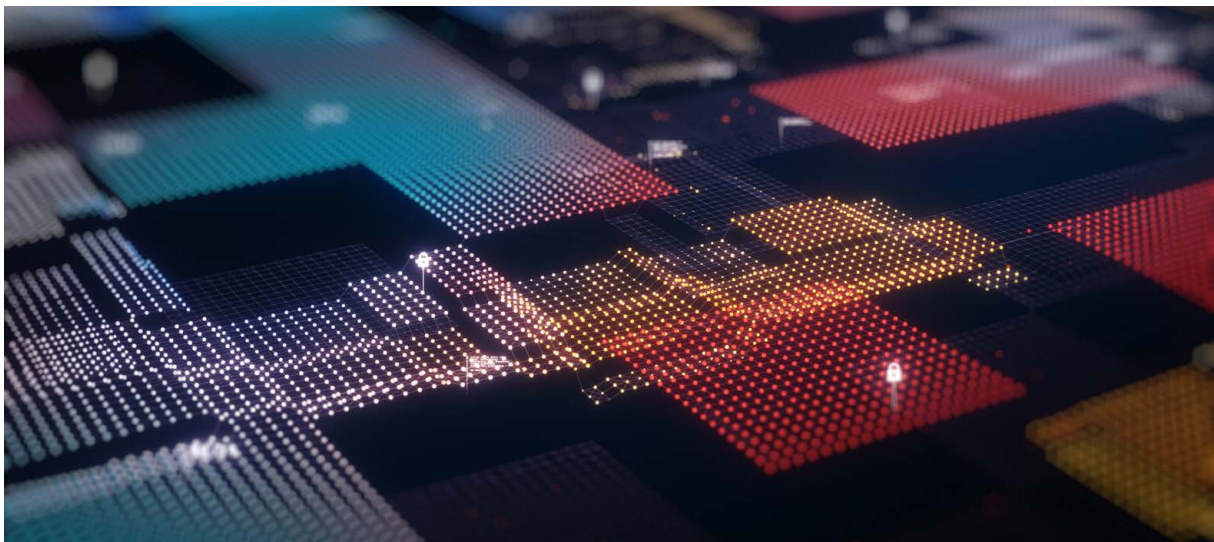
### ■ PwC의 관점

- 사이버 보안 대비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것은 이사회가 감독 관행을 개선했기 때문일까? 사이버 보안은 이제 모든 회의에서 가장 흔하게 논의되는 안건으로 자리 잡았다. CISO로부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논의 시간을 갖는 것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전 회의 자료와 이사회를 통한 보고는 통찰에 도움이 되고 간결해야 한다. 공시가 필요하다면 이사회는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최종적인 SEC의 사이버 보안 공시 규정은 사이버 전문 지식을 갖춘 이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이사 교육에서 사이버 보안 감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과 산업, 위험 프로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기업이 이사의 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고용, CISO와의 빈번한 회의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 ■ 이사회 의 과제

- 위반 관련 보고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정보 보안부터 법률, 재무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에서 부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 사이버 보안에 관한 이사들의 지식, 기술 및 인식이 이사회 의 확신 수준과 걸맞아야 한다. 사이버 보안 관련 역량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독립적인 관점을 제공받는다.



## 7. 이사회 효율성

대부분의 이사는 이사회 주요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회의와 위원회 업무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는 성과에 대한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기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사회 연간 회의 횟수는 제한되어 있고 안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대부분의 이사회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자료와 회의 안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10명 중 8명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94% 충분한 이사회 회의 준비 시간

88% 비공개회의에서의 의미 있는 토론

88% 적절한 위원회 구조

85% 위원회 업무에 할당된 충분한 시간

※ Source : PwC,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설문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효과적인 이사회라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자체 거버넌스 관행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신규 선임된 이사와 장기 재직한 이사 모두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37%는 이사의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35%는 이사회가 이사회 외에 경영진과의 관계 구축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사회 정기 안건이 기후 변화, 디지털 혁신, 사이버 보안과 같은 복잡한 주제에 대한 감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영진의 역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이사회 과제

- 이사회를 지원하는 경영진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공식적인 이사회 외에 더 광범위한 행사나 모임에 초대하거나 발표를 요청한다.
- 위원회에 대해 재검토한다. 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이사회 안건에 교육 세션을 추가한다. 이사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데 경영진이 앞장서도록 한다.

## 8. 주주관여

이사회는 계속해서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사들은 정기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이사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는 주주관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사의 관점을 들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 엄격한 감독을 점검하고 기업의 전략 계획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사들도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주주의 우선순위와 우려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사 중 **54%** 는 작년에 CEO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주주와 소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87%** 는 주주와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답했다.

※ Source: PwC, 2023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3

### 이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PwC의 관점

□ 이사회는 경영진의 주주관여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해당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을 위해 '항시 준비된' 이사를 최소 한 명 선정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사들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관여 우선순위와 회사의 관여 활동 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주주와의 회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는 보고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관여 활동을 요청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도 파악해야 한다.

#### ■ 이사회의 과제

- 기업의 주주관여 전략을 이해한다. 누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나? 수동적이지는 않은가? 제기된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대화가 어떻게 실행으로 이어지는가?
- 투자자에 대응해 이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 한 명을 정해 둔다. 이는 평상시는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도 적용된다.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Vol.23」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포커스 Vol.23 \(Click\)](#)

# Contacts

## 삼일PwC

###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Managing Director  
02-709-0824  
eunyoung.lee@pwc.com

### ESG

권 미 엽 Partner  
02-709-7938  
miyop.kwon@pwc.com

### GAAP

이 수 미 Partner  
02-3781-9548  
sumi.lee@pwc.com

### GAAS

성 현 주 Partner  
02-3781-9252  
hyun-joo.sung@pwc.com

### Tax

조 영 현 Director  
02-3781-9238  
young-hyun.jo@pwc.com

### Governance

하 미 혜 Managing Director  
02-709-8599  
mihye.ha@pwc.com

## PwC컨설팅

### PwC Consulting

최 재 열 Partner  
02-709-4792  
jaeyoul.choi@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2A-NL-002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